

중국의 자동차교통사고 책임강제보험조례에 대한 고찰

I. 서 설

중국은 「도로교통안전법(道路交通安全法)」의 규정에 따라 2006년 3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경 내의 도로를 통행하는 자동차의 소유자 혹은 관리자는 반드시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강제보험(机动车交通事故责任强制保险)을 가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동 보험은 피보험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 사고를 일으킨 자동차의 소유자, 피보험자를 제외한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사망 및 그의 재산에 대하여 보상을 해주기 위한 보험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자동차의 소유자 혹은 관리자가 동 조례에 따른 자동차교통사고 책임강제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공안기구 교통관리부서가 소유자 내지 관리자의 자동차를 압류함과 더불어 자동차의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지하여 법률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서 보험을 가입하게 한다. 그리고 최저책임한도액

의 2배 이상의 벌금을 치르게 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한 자동차교통사고책임강제보험조례에 대하여 살펴본다.

II. 자동차교통사고책임강제보험조례의 제정과 체계

「자동차교통사고책임강제보험조례(机动车交通事故责任强制保险条例)」는 중국 국무원 제 127차 상무회를 통과하여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조례이다. 전체적인 체계로는 제1장 총칙(总则), 제2장 보험가입(投保), 제3장 배상(赔偿), 제4장 벌칙(罚则), 제5장 부칙(附则)으로 구성되어 있다.

III. 구체적인 내용

1. 총 칙(제1조~제4조)

본 조례는 자동차도로교통안전사고피해인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배상을 받고 도로교통의 안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도로교통안전법」¹⁾, 「중화인민공화국보험법」²⁾에 근거하여 제정된 것으로(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국경내 도로에서 운행하는 자동차의 모든 소유자 혹은 관리자는 응당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교통사고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강제하고 있다(제2조). 이와 관련 본 조례 제3조에서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피보험자동차량에 승차한 자, 피보험자 이외의 피해자의 인신사망, 재산손실에 대하여 보험회사는 책임한도액 내에서 배상하여야 하는 강제성 책임보험이다”(제3조)고 규정함으로써 강제성 책임보험임을 명시하고 있다.³⁾ 따라서 중국 국경 내에 있는 자동차의 소유자 내지 관리자 모두는 자동차교통사고강제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법률의 규정에 따라 보험회사의 자동차교통사고 책임강제보험 업무의 실시를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관으로 하여금

관리 및 감독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공간기관교통관리부문, 농업(농업기계)주관부문은 마땅히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교통사고 책임강제보험의 정황을 감독 및 검사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 관리부문의 등록 거부 및 자동차 안전기술 검사기관에서의 검사를 거부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공간기관교통관리부문 및 기타 교통경찰은 도로교통안전 위법행위와 도로교통사고를 조사 처리할 때 마땅히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교통사고 책임강제보험의 보험표지도 검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조).

2. 보험가입(제5조~제20조)

보험가입과 관련해서는 제2장에서 투보(投保)라고 하여 규정하고 있다. 먼저, 중자보험회사(中資保險會社)(이하 보험회사라 함)는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관(보감회라고 함)의 비준을 경유하여, 자동차교통사고책임 강제보험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5조). 따라서 보감

각주

- 1) 도로교통안전법(道路交通安全法)은 1960년 반포된 「자동차관리방법(机动车管理办法)」, 1988년 반포된 「도로교통관리조례(道路交通管理条例)」, 1991년 반포된 「도로교통사고처리방법(道路交通事故处理办法)」을 폐지하고 2004년 5월 1일부터 시행된 법이다. 이후 동법은 2007년 10월 24일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30차 회의에서 수정 초안이 심사되고, 동년 12월 29일 31차 회의를 통과함으로써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 예정 공포된 상태이다.
- 2) 중국 보험법은 1995년 제정·시행에 들어간 법으로, 현행법은 2002년 10월 28일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0차 회의를 통과하여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동법의 내용은 우리나라의 보험계약법과 보험업법을 포함하여 규정한 것으로 전8장 152개 조항으로 구성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장 총칙(总则), 제2장 보험계약(保险合同), 제3장 보험회사(保险公司), 제4장 보험경영규칙(保险经营则), 제5장 보험업의 감독관리(保险业的监督管理), 제6장 보험대리인 및 보험중개인(保险代理人和保险经纪人), 제7장 법률책임(法律责任), 제8장 부칙(附则)으로 구성되어 있다.
- 3) 维基百科, 自由的百科全书, “机动车交通事故责任强制保险”, 2008. 10. 15.

회의 기준을 받지 아니하면 어떤 단체 내지 개인도 자동차교통사고책임 강제보험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제5조).

동 보험과 관련하여 보험회사는 표준보험약관을 작성하여야 하며 기초보험요율을 산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작성된 요율에 대하여 보감회는 이익도 손해도 보지 않는다는 원칙, 수지상등의 원칙을 근거로 심사하여 비준하여야 한다. 이 때 보감회는 전문가를 초빙하여 그 적절성의 여부를 평가하고 공청회를 열어 위의 기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수도 있다(제6조).

또한 보험회사는 자동차교통사고 책임강제보험 업무를 다른 보험업무와 구별하여 독자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 보감회는 매년마다 이를 조사하고 사회에 공개하여야 한다. 조사 결과 보험회사의 자동차 교통사고책임 강제보험 업무의 총체적인 영리 혹은 손실의 정황에 근거하여 그에 상응하는 보험비율을 조절하도록 요구 및 허가를 할 수 있다. 물론 보감회는 이러한 보험비율의 조정을 위하여 그 조정폭에 대해서도 보험회사로부터 마땅히 청취하여야 한다(제7조).

이렇게 산정된 보험요율에 대하여 피보험자 동차가 도로교통안전 위법행위와 도로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음 연도 그

차량의 보험요율을 최하위표준에 이를 때까지 낮추어 주어야 한다. 반면 교통사고 등을 발생케 하였을 경우에는 보험요율이 응당 증가하게 될 것이다(제8조).⁴⁾ 즉, 여러 번 도로교통안전 위법행위 도로교통사고를 발생케 하거나 혹은 중대한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였을 경우 보험회사는 마땅히 보험비율의 증가폭도 제고하게 된다. 반면 도로교통안전 중에서 피보험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비율 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 또한 이와 관련한 보험비율의 변동 기준에 대해서는 보감회와 국무원 공안부문이 함께 제정하게 된다(제8조). 이를 위하여 보감회, 국무원 공안부문, 국무원 농업주관부문 및 기타 유관 부문은 점차적으로 자동차교통사고 책임 강제보험, 도로교통안전 위법행위와 도로교통사고에 관한 정보공유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제9조).

보험계약자와 보험자 간에 보험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를 선택하여 보험계약을 체결 신청할 때에는, 보험회사는 이를 거절하거나 연기해서는 안 되며, 보감회는 자동차량교통사고 책임강제보험의 업무자격이 있는 보험회사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제10조).⁵⁾ 또한 보험계약의 체결시 보험계약자는 보험약관과 보험비율 이외 기타 부가조건을 요구

각주

4) 보감회는 2006년 6월 19일부터 <자동차교통사고책임강제보험 기초보험요율표>를 제시하였고, 2008년 2월 1일 제2차 새로운 조정요율표를 실행하였다(根据中国保监会 2008年 1月 11日 保监产险 27号 自2008年 2月 1日 实行 机动车交通事故责任强制保险基础比率表 참조).

5) 만약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 소유권자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소유권 변경절차를 밟아야 한다(동 조례 제18조).

하지 못하며(제13조), 보험회사에 대하여 중요 사항인 자동차의 종류, 차량번호(厂牌型号), 식별코드, 등록번호(牌照号码), 사용 성질과 자동차의 소유자 내지 관리자의 성명(명칭), 성별, 연령, 주소, 신분증 내지 운전증번호(조직기구코드), 보험 계약의 체결전 자동차 사고발생정황 및 보감회가 규정한 사항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제11조). 이렇게 체결된 보험계약에 대하여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제할 수 없다(제14조). 만약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제하기 전 서면의 형식으로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 내에 고지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의 기한 내에 고지를 하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제하지 못한다.

반면 보험계약자가 자동차교통사고 책임강제보험계약을 해제하지는 못한다. 다만, ① 피보험자동차가 법에 의하여登記 말소되었거나, 피보험자동차가 운행을 정지하였을 경우, ③ 피보험자동차가 분실되었음에 대하여 공안기관의 증명

이 있을 때에는 해제할 수 있다(제16조).

이렇게 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자 간에 자동차교통사고책임강제보험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 보험계약자는 응당 일차적으로 보험료의 전부를 지급하여야 한다.⁶⁾ 이에 대하여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체결에 대한 보험증권(保險單)⁷⁾ 및 보험표지(保險志)⁸⁾를 발급하여야 한다. 보험증권 등에는 보험번호, 차량번호, 보험기간, 보험회사의 명칭·주소 및 전화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⁹⁾ 보험회사가 발급하는 보험표지는 반드시 피보험자동차에 게시하여야 한다. 보험표지의 양식은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다. 즉, 보험증권 및 보험표지는 보감회에서 검사하고 제작한 것을 이용하여야 하며, 이 이외의 어떤 기관 내지 개인이 위조, 변조 및 위조·변조한 보험증권이나 보험표지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제12조).

이렇게 체결된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동 계약이 해제되기 전까지는 보험회사는 당연히 계약에 따른 보험책임을 져야 한다. 만약 보험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보험책임의 개시일로부터 계약해제일까지의 보험료를 받을 수 있지만, 그 이외의 보험료에 대하여는 보험계약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제17조).

각주

- 6) 자동차교통사고책임강제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회사는 보험약관과 보험요율에서 정한 것 이외의 부가조건을 요구해서는 안된다(제13조).
- 7) 단증(單證)이란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강제보험계약 관련 존재의 법정 증명을 하는 문건을 말한다(維基百科, 自由的百科全書, “机动车交通事故责任强制保險”, 2008. 10. 15).
- 8) 보험표지(保險标志)란 법률 및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발급하는 것으로 이미 강제보험계약에 가입하였다는 표시를 증명하는 것이다(維基百科, 自由的百科全書, “机动车交通事故责任强制保險”, 2008. 10. 15).
- 9) 피보험자는 피보험자동차에 보험표지를 비치하여야 하며, 보험표지의 양식은 전국적으로 표준화되어 있다.

동 보험의 보험기간은 1년으로 하지만, ① 외국 자동차가 임시(临时)로 중국 내에 들어온 경우, ② 자동차가 임시로 도로에서 운행하는 경우, ③ 자동차가 규정에 의한 폐기처분기한이 1년 이하인 경우, ④ 보감회가 규정한 기타 정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1년 미만의 단기 자동차교통사고책임강제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제20조). 만약 위의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속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과거 1년 동안의 보험증권을 보험회사에 제공하여야 한다(제19조).

3. 배 상(제21조~제35조)

피보험자동차가 도로교통사고로 인하여 동 자동차에 승차한 인원, 피보험자, 기타 피해자의 인적 손해, 물적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때에는 보험회사는 법률에 근거하여 자동차교통사고 책임강제보험의 책임한도 내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그러한 사고가 피해자의 고의에 의한 것일 때에는 배상하지 않는다(제21조). 배상을 할 때에는 ① 운전자가 운전자격증이 없거나 음주운전인 경우, ② 피보험자동차의 분실 내지 강탈당한 기간 내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

③ 피보험자가 고의로 발생시킨 교통사고인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동 보험의 책임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응급구조비용을 먼저 지급하고 후에 가해자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다만, 위의 요인으로 인한 사고가 피해자의 재산상 손실인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배상하지 않는다(제22조). 나아가 배상한도액은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다.¹⁰⁾ 그 액은 보감회를 경유하여 국무원공안부, 국무원위생주관부, 국무원농업주관부에서 정한다(제23조).

뿐만 아니라 국가는 도로교통사고와 관련 사회구조기금(이하 구제기금이라 함)을 설립할 의무가 있다.¹¹⁾ 이렇게 형성된 구제기금은 ① 응급비용이 자동차교통사고책임 강제보험책임의 한도액을 초과할 때, ② 사고자동차가 자동차교통사고책임 강제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때, ③ 자동차가 사고 후 도주하였을 때에 사용하게 된다. 즉, 도로교통사고로 인하여 위의 원인된 경우가 발생하였을 경우 동 구제기금으로 피해자 인신사망의 장례비용 또는 응급비용의 전부를 먼저 지급하고 사후 구조기금 관리기관은 가해자에 대하여 보상을 받게 된다(제24조).

동 구제기금은 ① 자동차교통사고책임강제보

각주

- 10) 책임한도액은 사망장애배상한도액(11만 위안 한도내), 의료비용배상한도액(10,000위안 한도 내), 재산손실배상책임한도액(2000위안 한도내) 및 피보험인이 도로교통사고 중 의무책임의 배상한도액으로 구성되어 있다(제23조).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机动车交通事故责任强制保险条款(2008) 第8条, <http://hi.baidu.com/%B6%AB%E9%AAk%C3%C5/blog/item/8dd28d8b10f190d4fc1f107b.html>, 2008. 10. 12).
- 11) 구제기금의 재원은 ① 자동차교통사고책임 강제보험의 보험료의 일정한 비율에 따라 제공된 기금, ② 규정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자동차교통사고책임 강제보험의 자동차의 소유자 내지 관리자에 대한 벌금, ③ 구제기금관리기관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도로교통책임인에게 배상받은 기금, ④ 구제기금수익, ⑤ 기타 기금에 의한다(제25조).

험의 보험료의 일정한 비율에 따라 제공된 기금, ② 규정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교통사고책임강제보험의 자동차소유자 및 관리자에 대한 벌금, ③ 구제기금관리기관이 법률에 의하여 도로교통책임자에게 받은 손해배상금, ④ 구제기금수익, ⑤ 기타 기금으로 구성한다(제25조). 이러한 구제기금의 구체적인 관리 방법은 국무원재정부문에서 보감회, 국무원 공안부문, 국무원위생주관부문, 국무원농업주관부문에서 제정하여 실행한다(제26조).

보상을 받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피보험자동차가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보험자 또는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통지를 하면 보험회사는 즉시 구체적인 배상 절차 등 관련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제27조). 이에 따라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신청하게 되는데,¹²⁾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신청하면 보험회사는 응당 피보험자가 제공한 증명서와 자료에 근거하여 5일 이내에 보험책임에 속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만약 보험책임에 속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경우 보험회사는 마땅히 서면으로 그 이유를 설명하고, 보험책임에 속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피보험자와 지급보험금에 대한 합의가 성립한 후 10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제29조).

피보험자와 보험회사와의 사이에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중재 혹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제30조). 보험금의 지급 방법은 보험회사가 피보험자 또는 피해자에게 직접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¹³⁾

다만,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응급치료환자에 대한 응급치료비용을 먼저 지급할 때에는 보험회사가 공안기관교통 관리부문의 통지를 받아 대조 확인을 거친 다음 지급하게 된다(제31조). 이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은 당연히 국무원 위생관리부문이 조직하고 제정한 관련 임상진료 지침서에 따라 도로교통사고 중의 부상당한자를 구조하거나 치료하여야 한다(제32조). 나아가, 보험회사가 먼저 보험금 내지 응급치료비용을 지급하거나 구조기금 관리기관에서 응급치료비용을 지급하였을 경우에는 구조기금 관리기관은 관련 부문이나 의료기관에 관련 정황을 요구하여 확인하여야 한다(제33조). 이와 관련하여 보험회사 내지 구조기금 관리기관의 구성원은 관련 당사자의 개인적인 정보를 취득하였을 경우 그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제34조).

4. 벌 칙(제36조~제41조)

보감회의 비준을 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자동차교통사고 책임강제보험 업무에 종사하는 경

각주

- 12) 보험회사는 이러한 신청을 받으면 보험회사는 1일 이내에 서면 형식으로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위한 관련 증명서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제28조).
- 13) 도로교통사고 손해배상 항목과 표준은 관련 법률규정에 의하여 집행한다(제35조).

우에는 보감회가 단속을 하게 된다. 만약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하게 되고, 만약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감회에 의하여 위법소득을 몰수하게 된다. 그런데 위법소득이 20만 위안을 넘은 경우에는 위법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위법소득이 없거나 위법소득이 20만 위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2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6조).

나아가, 보험회사가 보감회의 비준 없이 자동차교통사고 책임강제보험 업무에 종사하면 보감회는 책령(責令)을 통하여 이를 시정케 하고, 수익한 보험료는 반환토록 하며, 위법소득은 몰수한다. 만약 위법소득이 10만 위안 이상일 때에는 위법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위법소득이 없거나 10만 위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지정된 날짜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거나 엄중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영업정지 또는 보험업무경영 허가증을 취소한다(제37조).

보험회사가 본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보감회는 책령(責令)을 통하여 이를 시정케 하고 5만 위안 이상 3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그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업무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책령을 통하여 새로운 업무의 접수 정지 내지 보험업무경영 허가증을 회수하고 동 업무를 취소할 수 있다. 다음의 행위란 ① 자동차교통사고 책임강제

보험의 승낙 거절 내지 연기의 경우, ② 통일적인 보험약관과 기초 보험요율에 따른 자동차교통사고 책임강제보험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③ 자동차교통사고 책임강제보험 업무와 기타 보험 업무를 구분하지 않고 함께 계산하는 경우, ④ 보험계약자를 강제하여 상업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⑤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교통사고책임 강제보험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⑥ 약정보험금의 배상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 ⑦ 규정에 정해진 때에 지급하지 않거나 또는 응급치료비용을 대신 지급하지 않는 경우 등이다(제38조).

또한 자동차의 소유자 내지 관리자가 규정에 따라 자동차교통사고 책임강제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서 자동차를 압류하고 자동차 소유자 내지 관리자에게 법률의 규정에 따른 보험에 가입할 것을 통지함과 더불어 보험가입시 최저책임한도액에 대한 보험료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한다(제39조).

물론 자동차 소유자 내지 관리자가 규정에 따라 이후에 자동차교통사고책임강제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마땅히 동 압류 차량을 제때에 반환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도로에서 달리는 자동차가 보험표지를 게시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공안기관 교통부에서 동 자동차를 압류하고 당사자에게 보험표지 내지 그에 상응한 절차를 다시 밟도록 경고하거나 20위안 이상 2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물론 이 경우도 당사자가 그 이후 교통표지를 게재하거나 그에 상응

한 절차를 밟을 경우에는 제때에 압류한 자동차를 반환하여야 하는 점은 마찬가지이다.

이 외에도 보험표지를 위조 내지 변조하거나 위조 내지 변조한 보험표지를 사용한 경우 및 기타 정당한 발급기관이 아닌 기관에서 발급한 보험표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안기관교통관리부에서 동 차량을 압류 및 구류하며, 200위안 이상 2,0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향후 이에 대한 보완조치를 하였을 경우에는 위와 마찬가지로 자동차를 반환하여야 한다.

5. 부칙(제42조~제46조)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부칙을 규정하고 있다. 먼저, 동 조례의 부칙 제42조에서는 동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다. 즉, 보험계약자(投保人)란 보험회사와 자동차교통사고 책임강제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비추어 보험료 지급의무를 지는 자동차의 소유자 내지 관리인을 말하며(제1항), 피보험자란 보험계약자 및 그가 허락한 합법적인 운전자를 말한다(제2항). 마지막으로 제3항에서는 응급비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즉, 응급비용이란 자동차가 도로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여 인적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의료기관은 국무원 위생주관 부문조직에서 제정한 관련 임상진료 지침서에 따라 생명이 위급한 경우 또는 위급하지 않지만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는 등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 발생하는 의료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43조에서는 자동차가 도로 이외의 지방 통행시 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인적 손해 내지 물적 손해를 발생케 한 경우에 대한 규정으로 이 경우 본 조례의 예에 의하여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중국인민 해방군과 중국인민 무장경찰부대에 편재되어 있는 자동차가 자동차교통사고 책임강제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은 동 조례에 의하지 않고 중국 인민해방군과 중국 인민무장경찰부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에 의한다(제44조).

마지막으로 본 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45조에서는 자동차의 소유자 내지 관리자는 본 조례의 규정이 실시된 이후 3개월 이내에 자동차교통사고 책임강제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본 조례의 규정 실시 전에 이미 상업성 자동차 제3자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기간 만료 후 마땅히 자동차교통사고 책임강제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 재 종

(선문대 법대 교수)